

2026. 9. 1.자 공립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2026. 4.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목 차

I. 관련 근거	1
II. 목 적	1
III. 방 침	1
IV. 세부 시행 계획	3
1. 공모 교장 운영 개요	3
2. 공모 교장 지원 자격	7
3. 공고, 접수 및 지원 서류 공개	9
4. 심사 및 추천 대상 선정	10
5. 표절검사 및 처분 기준	20
6. 공모 교장의 평가	21
7. 공모 교장의 인사 관리	22
V. 행정 협조 사항	24
참고자료 1. 추진 일정	27
참고자료 2. 업무 흐름도	28
참고자료 3.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예시	29
참고자료 4. 관련 법령	30
참고자료 5. 각종 서식	34

2026. 9. 1.자 공립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I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6(공모 교장의 임용·평가, 자격기준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 2026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교육부 교원정책과-50011, 2025. 10. 1.)

II 목 적

- 단위학교 책임 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
-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및 단위학교 자율 운영 지원
-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를 통한 교직 사회의 활력 제고

III 방 침

가. 공모학교 지정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
-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

나. 공모 교장 지원 서류 전국단위 표절 검증

- 교육청에 공모 교장 표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공모 교장 지원 서류가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징계 등 엄중 조치

다. 강화된 교장 임용제청 배제기준 적용

- 교육감(교육장)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임용제청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 진행
- 임용제청 추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자격 박탈
- 징계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공모 지원 제한

단, 4대비위* 관련자는 징계 말소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지원 제한

* 4대비위: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비위, 성적조작

- 2022.1.1. 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 처분을 받은 자는 공모 지원 제한

라. 공모 실시 학교 신청 절차를 위한 학부모 참여 과정 지원

-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 의견수렴용 가정통신문 예시(안)를 단위학교에 제공
- 학부모 의견수렴은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운영 가능

마. 내부형(B) 유형 지정 기준

- 신청학교 중에서 교장공모제 찬성률, 내부형(B) 유형 찬성률 등을 고려하여 학년도별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범위 내에서 지정

바. 현임교 지원 제한

- 모든 교장공모제 유형에서 현임교 지원 제한

사.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비공개

- 학교 심사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함

IV

세부 시행 계획

1 공모 교장 운영 개요

가. 공모 교장 임용기간

○ 2026.9.1. ~ 2030.8.31.(4년)

※ 단, 임기 중 퇴직 등 교장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임기 종료

※ 정년이 4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 동안 임용

나.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 지정 규모(지정 가능 비율)

○ 최종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 지정 규모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6.8월말 기준 교장 결원(정년퇴직, 중임만료)의 2/3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다. 교장공모제 신청 대상 학교

○ 정년퇴직, 중임만료, 공모만료, 정기전보(4년) 등으로 2026.9.1.자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 가능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장공모제 운영 대상교에서 제외 가능

- 교장 정기전보로 인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중에서 현임 교장의 정년 잔여 또는 중임만료 임기가 2년 이하(단, 강동송파, 강남서초 중등학교는 1년 이하)인 경우

- 학교 통·폐합, 휴교 예정으로 공모 교장 임용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 교장 정기전보로 인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중에서 현임 교장의 정년 잔여 또는 중임만료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교장공모제 운영 대상교에서 제외(중등교육과-36992, 2022.10.25.)

※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구분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정년퇴직, 중임만료, 공모만료		○	○
정기전보	현임교장의 정년 잔여 2년 초과	○	○
	현임교장의 정년 잔여 2년 이하	생략가능	○
	현임교장의 정년 잔여 1년 미만	교장공모제 운영 대상교에서 제외	

- 신설학교 및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 시행

라. 학교 유형별 공모 유형 및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학교 유형	공모 유형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추진근거
일반학교	초빙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자율학교	내부형(A)	○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내부형(B)	○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 2026.3.1.자 학교 유형에 따라 공모 유형이 결정됨
- 자율학교는 교장공모제 운영 신청 시, 공모 유형을 내부형(A) 또는 내부형(B)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
- 내부형(B) 유형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 가능하며, 해당 공모 유형 지정을 신청한 학교 중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교육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운영 가능(학년도별 내부형 신청 학교 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정)

마.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신청 절차

- 교장공모제 신청 대상 학교(일반학교, 자율학교)는 지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학교 신청에 대한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함

○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신청 및 지정 절차(일반학교, 자율학교)

순서	절 차	세부 내역
1	학교 구성원 (교직원 · 학부모) 의견수렴	○ 반드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교장공모제 운영 여부를 결정 ○ 교직원 의견수렴 방법 - 전 교직원의 의견수렴은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u>내부통신망 활용</u> 등의 방식으로 운영 가능 ※ 교직원의 범위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거권자 ○ 학부모 의견수렴 방법 - 사전에 가정통신문으로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안내 ※ 학부모 의견수렴 시 반드시 공모 교장 유형별 자격 등 교장 공모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함께 제공 ※ [참고자료 서식 7] (의견수렴용 가정통신문 예시) 활용 - 학부모 의견수렴은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u>온라인 설문조사</u> 등의 방법으로 운영 가능 ○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 가능, 해당 학교에서 결정 ○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통보
2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신청 여부 심의 ○ 지정 신청 시에는 공모 유형 및 공모 요건 심의 ○ 재공고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공모교장심사결과 적격자 없는 경우 (85% 미만) 또는 1명만 지원한 경우, 향후 공모 추진계획 수립 심의 - 지원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모 철회 또는 유예 - 지원자가 1명인 경우: 공모 철회 또는 공모 절차 진행 여부 결정 ○ 지정 신청 시에는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수 및 구성비율도 함께 심의 (세부내용은 12쪽, [참고자료3] 참조) - 추후 교장공모제 추진 시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과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학교장 및 소속 교육(지원)청에 제출
3	지정 승인 신청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공모 유형 및 공모 요건 포함) 승인 신청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교장공모제 미신청으로 결정된 경우, 심의 서류는 자체 보관하고 교육청 제출 서류는 없음
4	지정 통보	○ 교육청에서는 교장공모제 운영 신청 사항 심의 후, 공모 지정 여부 통보

※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관련 각종 서류는 감사 등에 대비하여 1년간 학교 자체 보관 철저(신청하지 않은 학교 포함)

바. 공모 요건 작성 방법

- 해당 학교의 지역 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 학교교육과정, 학교 특성, 공모 교장의 필요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나이, 성별, 경력, 학력, 출신 등 학교경영능력과 무관한 내용은 공모 요건이 될 수 없음

- 추상적인 공모 요건 금지

(예) 창조적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

사. 교육청에서의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 통보

-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결원(정년퇴직, 중임만료)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2/3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 학교로 지정 · 통보
 - 학교교육력 제고 또는 교육 혁신 등 학교 발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는 학교 여건, 교육 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모학교로 지정
 - 임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 수가 적정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교 여건에 따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 지정
 -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범위 내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B) 유형 학교로 지정
- ※ 비율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 신청 학교 수의 50% 범위 내로 산정

< 내부형(B) 유형의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내부형(B) 유형으로 신청한 학교 중에서 지정
- ‘내부형(B)’ 유형 신청 학교가 1개뿐인 경우, 신청 학교를 ‘내부형(B)’ 유형으로 지정

- 내부형(B) 유형 신청 학교 중에서 교장공모제 찬성률, (B)형 찬성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형(B) 유형을 지정
- 신설학교 및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 시행

아. 공모 지정 철회 등

- 공모 결과(재공고 포함) 지원자가 1명인 경우,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추진
 - ※ 교장공모제 학교 신청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향후 공모 추진 계획 수립해야 함(공모 철회 또는 유예(다음 학기 재공모, 직무대리))
- 교장 공모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 1) (학교) 교장공모제 학교 신청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조치 방향을 미리 결정하여 두고, 해당사항을 교육청에 보고(서식 1 참고)
 - 2) (교육청) 해당 학교의 의견 및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또는 재추진 결정

2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가. 지원 자격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부 및 동 소속기관으로 진출된 자 포함)으로서, 교장 공모 유형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장공모제 유형별 지원 자격 세부 기준은 4쪽의 표를 참고

나. 지원 자격 제한

- 임용일(2026.9.1.) 기준으로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
 - ※ 단,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는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도 지원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등 법령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의 제한 요건 해당자
- 징계 말소기간 미경과자
 - ※ 단, 교원 4대비위자(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비위, 성적 조작)는 징계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제
- 2022.1.1. 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 처분을 받은 자는 공모 지원 제한
- 임용예정일 기준 현 재직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
 - ※ 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현 재직교에는 지원 불가
 - ※ 공모만료 학교의 교장, 교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 전임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전보된 후 3년 미만인 자
-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타 학교 공모 교장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자
- 현임 수석교사(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 임용예정일 기준 휴직 또는 파견 중인 자

다. 유의 사항

-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자를 포함 (단,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미취득 시 임용 취소)
- 교육경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으로 고용휴직 이외의 다른 휴직 경력은 제외
-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 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응모기간 중 중복 지원 금지(지원자는 1개교에만 지원 가능)
- (지원일 기준)교육지원청 근무 교육전문직원의 소속 지원청 내 학교 공모 신청 금지
 - ※ 위의 제한 사항 등은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

3 공고, 접수 및 지원 서류 공개

가. 공고 및 접수

- 공고: 2026.5.26.(화) ~ 6.9.(화) 16시까지
- 접수: 2026.6.4.(목) ~ 6.9.(화) 9시~16시
 - ※ 토요일무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
 - ※ 재공고 및 접수 기간: 2026.6.10.(수) ~ 6.12.(금) 16시까지
 - ※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미리 결정한 대로 진행(공모 철회 또는 유예)

나. 공고 내용

- 해당 학교의 지역 여건, 학교 특성, 공모 교장의 필요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공모 교장 요건을 명시
 - ※ 학교경영능력과 무관한 공모 요건은 기술하지 않음
 - ※ 추상적인 공모 요건 금지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전국단위 표절검사를 위한 자료가 됨을 공고문에 명시

다. 공고 방법

-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 접수기간 동안 매일 16시 이후, 당일까지 접수 누적 인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 심사 예정 일정을 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하되, 확정된 심사일정 등은 접수 기간 종료 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라. 공모 교장 지원 서류 사전 공개

공개 서류	공개 기간	문서 형태	공개 장소
자기소개서	접수마감일 다음날 ~ 교육(지원)청 심사 당일	익명 처리	해당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교경영 계획서	접수마감일 다음날 ~ 교육(지원)청 심사 당일	익명 처리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심사위원 이메일 등으로 익명화된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제공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게시)되며 전국단위 표절검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됨
- 심사자료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 불가, 기재한 경우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감점 조치(학교, 교육청 각각의 심사 단계별 총점의 10점 감점)

마. 강화된 교장 임용제청 배제 기준 적용

- 교육감(교육장)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 진행
- 임용제청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 자격 박탈 [7~8쪽 참고]

4 심사 및 추천 대상 선정

가. 심사 주관

심사 구분	심사위원회 명칭	심사위원회 구성
학교 심사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 심사	교육(지원)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교육감(교육장)

※ 주관: 초등학교·중학교는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

-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구성하되, 심사 시작 당일까지 심사위원 명단 보안 철저
- 심사위원은 공모 교장 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
-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지원자의 제자의 학부모 등 공모 교장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위촉 제한
-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

-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서에 위배되는 자이거나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하고 심사행위를 무효화
- 후보자 임용 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심사위원의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상황에 따라 차후 절차 진행
- 후보자 임용 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후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반 사실이 임용된 교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님
- 지원자의 명단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공개
 - ※ 지원자 명단 비공개로 사전 담합 및 로비 의혹 차단
 - ※ 명단 공개는 기피 사유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며,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와 면접 대상자는 심사 종료 시까지 관리번호로 처리

나.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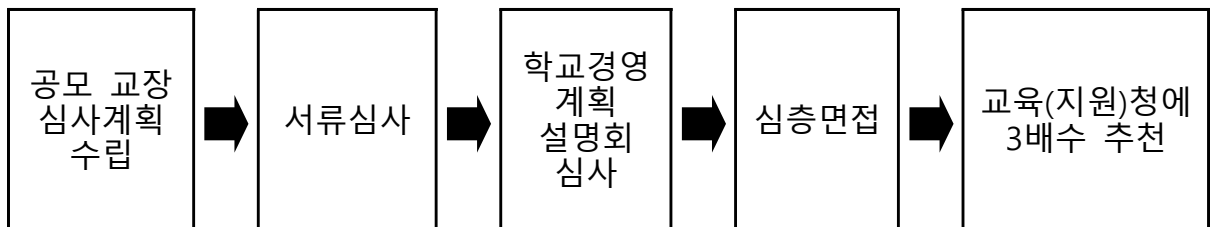
- 위원 구성 방법

구 분		내 용
위 원 수		- 교원, 학부모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여 학교장이 위촉 ※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원, 학부모 및 외부인사 등 위원별 인원을 사전에 결정(교장공모제 신청 시 학운위에서 결정)
위원 구성 비율	학부모 위원	- (40~50%)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위촉
	교원 위원	- (30~40%)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 (교장 및 공모제 운영 담당 교원 제외) 중에서 위촉. 단, 교직원 전체회의 대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신망 활용 방식 등으로 운영 가능 - 공모 교장 지원자 접수 종료 후 입후보자 없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선정된 교원에게 별도 통보. 단, 선정된 교원이 심사위원 수행을 거절할 경우 후순위자 선정
	외부 위원	- (10~30%)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원이 아니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의 졸업생, 교육 관련 전문가,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중에서 위촉 - 외부위원 자격 등 세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은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

- 심사위원은 남녀 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가급적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
- 심사위원 및 진행 위원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 심사역량 강화 (심사 절차, 심사 기준, 심사 시 고려사항 등)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접수 당시 지원자가 2인 이상이었다가 심사 당일 지원자가 1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함
- 위원 수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의 불참을 고려하여 12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10명으로 할 경우에는 예비심사위원 확보가 필요하다.

다. 학교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세부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의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실시

1) 교장공모 심사계획 수립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적합한 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의견 등을 심사에 반영 가능
-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학교장,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철저
-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층면접 등의 심사 단계와 방법, 그에 따른 평가영역, 배점, 동점자 순위 결정 방법 등을 포함

※ 심사위원 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따라 소수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

- 특정 심사 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의 단계적 심사 금지

※ 학교의 특정 주체(교사, 학생 등)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모 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심사의 순서는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층면접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권장
- 서류심사와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는 같은 날 실시 가능하며, 심층면접은 반드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에 실시
- 개별 지원자의 장·단점에 대해 심사위원 간 사전에 서로 협의하거나 담합 행위를 금지하며, 각 심사위원의 심사에 대해 독립성 보장
- 심사에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서류심사

- 지원자의 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기타 추천서 등을 심사
- ※ 심사자료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 불가, 기재한 경우 심사 시 학교 심사 총점에서 10점 감점 조치
-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동료, 상사 등 주변사람들의 평가도 반영할 수 있음
-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타 학교의 계획을 맹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 설명회는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최 안내
- 설명회 개최 시 과도한 자료 준비나 과열·혼탁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행동 자제 요망(PPT 등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 금지)
- 심사는 설명회에 참석한 교직원 및 학부모가 실시하며, 심사 배점은 총점의 30% ~ 40% 범위 이내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단, 반영 비율은 교직원과 학부모 각각 50%로 함)

- 교장공모 학생 참관단 운영(학교 자율 선택)

※ 교장 공모 학생 참관단

1. 목적
 - 교장 공모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관심을 신장시키고 참여 독려
 - 학생의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주인정신, 참여정신 배양
2. 역할
 - 공모 교장 학교경영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원자의 발표 경청(단, 심사권은 없음)
3. 학생 참관단 구성
 -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공모에 적용**
 -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자발적 구성, 지도교사 지정
4. 참관단 구성 여부 및 참관 인원 등 기타 세부 사항은 학생자치회에서 결정

※ 설명회 개최 시 참고 사항

- 설명회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원(지지)하는 외부인 참관 통제(단, 시민참관제 운영으로 참관이 허용된 자는 입장이 가능하나 심사권은 없음)
- 시민참관제 운영 시 선동하는 참관인은 퇴장시킬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
- 설명회 심사 교직원의 범위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거권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설명회 심사 시 학부모는 재학 중인 학생의 1가족 당 1표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심층면접

- 지원자의 인성, 도덕성, 위기관리능력,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리더십, 교육격차 해소 전략 등을 심사
- 지원자에게 공평하고 적정한 시간(지원자 1인당 30분 등)을 할당하여 역량을 충분히 평가

5)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비공개

- 심사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2항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교육(지원)청에 추천(3배수 범위 내)

- 학교 심사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① 학교운영위원회장은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② 학교장은 상위 3인의 순위와 최종 점수(100점 만점)를 명기하여 교육(지원)청에 추천
- 지원자(심사 대상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교육(지원)청 심사 대상자로 추천
※ 심사 결과 부적격자는 지원자 수와 무관하게 추천 제외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심사 결과 보고 후에, 지원자의 추천 여부 결과를 지원자별로 안내
- 학교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사항(공모 철회 또는 유예)에 따라 추진
- 공모 절차 완료 후 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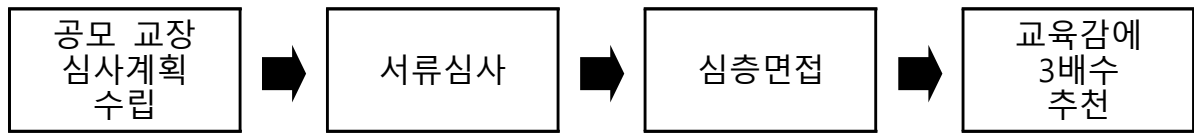
7) 공정한 학교 심사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관리

-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교 심사에 대하여 모니터링, 심사 점검표 작성·제출(서식 6-2)

라.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구성·운영(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별도 구성)
- 평가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육전문가 등)을 50% 이상으로 함
 - * 외부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전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은 최소화하도록 노력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제척 등 엄격히 적용
- 평가위원은 남녀 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가급적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1인일 경우에도, 교육(지원)청 심사를 실시

마. 교육(지원)청 심사(교육청 공모 교장심사위) 세부 사항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실시

1)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 학교 심사 결과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적격성 여부 및 학교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 평가
- ※ 심사자료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 불가, 기재한 경우 심사 시 교육청 심사 총점에서 10점 감점 조치
- 후보자 3인의 최종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
- 교육(지원)청에 제출된 학교 심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서식 6-2) 등을 이용하여 공모 교장 지원과정 및 학교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도 병행
- 교육(지원)청 심사 과정에 대한 초·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의 모니터링, 심사 점검표 작성·제출(서식 6-3)
- ※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 거부

2) 교육감에게 추천(3배수 범위 내)

-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를 합산한 뒤 각 후보자의 점수와 순위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추천
- ※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를 1:1 비율로 반영,
학교와 교육청 심사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합산
- 심사 대상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교육감에게 추천
- 심사 종료 후 학교 심사 점수를 교육청 심사위원회에게 공개
- 심사 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 철회 가능

3) 심사 결과에 반영할 사항

- 표절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반드시 확인
- 「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 지침」상의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여부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말소기간 재확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상의 승진임용제한 여부 확인 등

바. 교육감의 공모 교장 임용제청 추천

-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 ※ 교육감이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순위자 중 1순위자가 아닌 자를 최종 1명으로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
- 교육감은 1, 2차 공모 심사 결과 지원자가 일정 점수(학교 심사 85%, 교육청 심사 85% 수준)를 얻은 적격자가 없으면 학교의 의견 및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또는 재추진 결정
- 교육청 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현임교 또는 전임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판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청 심사 집계표 등의 심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선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

사.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1) 심사위원 역량 강화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연수를 반드시 실시

2) 학교경영계획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

-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성 등의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타 학교의 계획을 맹목적으로 인용한 경우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인사와의 관계를 기재한 경우 단계별 총점의 10점 감점 처리(학교 심사 총점의 10점, 교육청 심사 총점의 10점)

※ (업무담당자) 지원자가 익명 처리하여 제출한 서류에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원자에게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권고하거나 감점 처리 지침 안내

※ (심사위원) 심사자료의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 등에 대해 공정성 훼손 여부를 심사하고 감점 여부 결정

3) 사전 심사위원 접촉 제한

- 공모 교장 지원자 또는 후보자가 공모 심사 전에 공모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음

4) 지원 자격에 대한 철저한 확인

- 교육감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추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제청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자격 박탈

5)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 조정

- 심사위원 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집계

※ 심사 결과 집계 시 유의 사항

- 각 심사유형별로 심사위원 평가점 중 위원수의 10%에 해당하는 상위 점수와 위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하위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 처리함 (※ 제외 인원은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1명 미만은 1명으로 함)
 - 학교 심사
 - 심사위원 수 14명 이하: 최고 점수 1명, 최하 점수 1명 제외
 - 심사위원 수 15~20명: 최고점으로부터 2명, 최하점으로부터 2명 제외
 - 교육(지원)청 심사
 - 심사위원 수 7명: 최고점 1명, 최하점 1명 제외

6) 참관제도 활성화

- 학교·교육(지원)청에서 공모 교장 심사과정(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층면접) 중 참관이 가능한 심사영역에 학부모, 교원단체, 지역인사 등 희망자 심사과정 참관 허용
- 참관제도 운영으로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지원)청 심사 시 참관 희망 교원에 대해 출장(여비부지급) 인정으로 참여 활성화
- 면접실 규모 등 학교·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참관 인원과 참관 방법은 추후 결정

7) 이의제기 기간 운영

- 공고 시 이의제기 신청기간 안내: 6.25.(목) ~ 6.29.(월) 16시까지
- 접수방법: 국민신문고 또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업무메일
- 심사과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와 함께 접수된 사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즉시 조사·조치하고 교육청에 보고

8) 심사위원 명단 공개

- 심사가 끝난 후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공개
- 공개기간: 공모 교장 임용 추천일 ~ 공모 교장 임용일
- 공개장소: 본청 홈페이지
- 공개내용: 최소한 약력 등은 파악할 수 있도록 부분공개
-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9) 공정한 심사·선정 절차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교 심사에 대하여 모니터링, 심사 점검표 작성·제출(서식 6-2)
- 교육(지원)청 심사 과정에 대한 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의 모니터링, 심사 점검표 작성·제출(서식 6-3)
- 공모 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부당하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공모 철회 또는 취소

5 표절검사 및 처분 기준

가. 서약서 징구

- 지원자로부터 지원 서류에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 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 감수에 대한 서약 내용을 지원서에 포함하여 징구

나. 조치

-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 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향후 공모 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
- ※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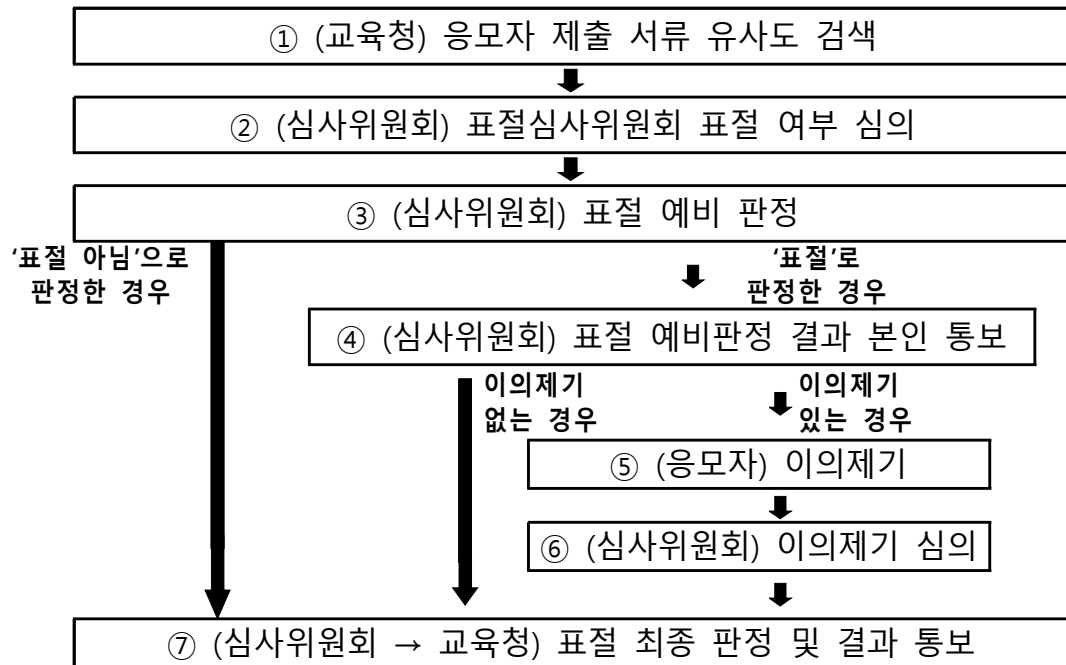
다.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기구: 본청에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5명 이내)
 - ※ 초·중등 별도 구성
- 심사대상: 응모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심사기간: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3배수 추천 이전까지
- 대상범위: 2011.9월 이후 공모 교장 임용자와 2026.9.1.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공모 교장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DB(전산화) 자료
 - ※ 전국단위 공모 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운영(2014.9~)
 - ※ 책자, 논문, 교육청·학교 자료 등에서 인용 시에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표절로 판정될 수 있음**(본인의 저술·교육청 제출 자료 인용 시에도 출처 표시)

< 유사성 검사 처리 기준 >

- 국문: 연속동일 6어절 이상 일치할 경우 표절심사 대상영역으로 처리
- 영문: 연속동일 10어절 이상 일치할 경우 표절심사 대상영역으로 처리
- 인용/출처표시 문장 검사대상에서 제외
 - 인용문장 기준: double quotation 표시(" ")의 직접인용부분
 - 출처표시문장 기준: APA, MLA, Chicago style의 내주처리방식 기준

○ 심사위원회 표절 판정 절차



6 공모 교장의 평가

가. 평가 대상: 초·중·고 공립학교 공모 교장

나. 평가 시기(임용 기간 중 2회 평가)

- 중간평가: 2년차(임기시작 13~24개월)에 실시
- 최종평가: 4년차(임기시작 37~46개월)에 실시

다. 평가 내용: 직무수행능력, 성과, 교장으로서 적격성 등

- 학교운영계획, 학교평가 및 장학 결과, 학업성취도 등 학생 성과 향상도,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 기타 표창 등 학교 운영 관련 실적 등
- 적격성 검증: 청렴도, 자질, 징계 여부 등 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라. 평가 결과 처리

-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징계 등으로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발생 시 인사 조치

※ 학 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후 교육감에게 인사 조치 요청

※ 교육감: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

마. 평가 시행: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시행

7 공모 교장의 인사 관리

가. 공모 교장의 임용권자: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공모 교장의 임기: 2026.9.1. ~ 2030.8.31.(4년)

-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5항)
- 교장으로 근무 중인 자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모 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됨
- 공모 교장은 임기 중 인사 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음

다. 자격연수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 자격연수 실시
※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 제2항

라. 공모 교장의 임기 중 인사 조치

- 공모 교장으로 임명된 자는 임기 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전직할 수 없음
(2021.3.1.부터 적용, 기존 공모 교장 임용자 포함)
- 공모 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 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하거나,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 교장의 직을 해제할 수 있음
- 공모 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교운영위원회에 “인사 조치 심의 요청”을 하였을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 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마. 공모 교장의 징계

- 공모 교장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징계처분 결과 배제징계(파면·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시까지 현직 유지
- 다만, 징계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임기 중 인사 조치 가능하며, 처분 결과 등은 중간평가에 반영

바. 임기 중 공모 교장의 직이 해제된 자에 대한 사후 처리

-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 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 교장의 궐위(재임 중 면직, 징계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교장공모제 적용 취소 조치
- 임용권자가 공모 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하였을 때는 교육부에 보고함

사. 임기만료된 공모 교장의 인사

-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
 - ※ 단, 공모 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은 공모 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 가능
- 공모 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재임용 가능
- 교장중임을 마치고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만료(공모 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경우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음

1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 제출서류

가. 제출내용

-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신청 및 공모 요건 승인 요청 < 서식 1 >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교감 원본대조필)
 - 교장공모제 관련 회의록 해당 부분(위원 명단 등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제출

나. 제출기한: 2026. 5. 7.(목) 16시까지

다. 제출처: 소속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및 본청 초등교육과

라. 제출방법: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제출

마.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교장공모제 미신청으로 결정된 경우,
심의 서류는 자체 보관하고 교육청 제출 서류는 없음

2 교장공모제 지정(운영) 학교 제출 서류

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제출

- 제출처: 소속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및 본청 초등교육과
- 제출내용 및 제출기한

제 출 내 용	제 출 기 한
1. 홈페이지 공고문	2026.5.21.(목) 16시 (재공고 시) 6.9.(화) 17시
2. 서식 3 교장공모 지원 현황	2026.6.9.(화) 17시 (재공고 시) 6.12.(금) 17시
3. 서식 2-3 자기소개서*	2026.6.10.(수) 13시 (재공고 시) 6.12.(금) 18시
4. 서식 2-4 학교경영계획서*	
5. 서식 4-5 심사위원 명단	2026.6.18.(목) 14시
6. 서식 5-2 학교심사 결과 후보자 추천서	
7. 서식 6-2 심사 점검표(학교용)**	

※ 유의사항: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비공개(5호) 보안설정

* 지원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PDF 파일로 제출

- 표절심사용은 실명으로 제출

- 홈페이지 게시용은 소속 및 성명 등 본인 식별 가능한 내용을 익명처리

※ 익명처리: 지원자의 신상을 알 수 없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소속, (전)직위, 사진 등을 "○○○"으로 변경 또는 삭제

** 심사 점검표는 학교 심사 공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자체 점검 결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직송 제출

- 제출처: 소속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제출내용 및 제출기한

제 출 내 용	제 출 기 한
1. 서식 2-3 자기소개서 (익명7부, 실명1부)	2026.6.18.(목) 16시
2. 서식 2-4 학교경영계획서 (익명7부, 실명1부)	
3. 기타 증빙서류	

3 교장공모 지원자

가. 제출서류

- 교장공모 지원서 **서식 2-1**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서식 2-2**
- 자기소개서 **서식 2-3**
- 학교경영계획서 **서식 2-4**
- 인사기록카드 사본(교감 원본대조필)
- 교장자격증 사본(교감 원본대조필, 자격 소지자에 한함)
- 대학원 학위 증명서 사본(교감 원본대조필, 학위 소지자에 한함)
- 기타 추천서 등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 모든 제출서류는 흑백으로 출력(**컬러 출력 금지**)

나. 공고 기간: 2026.5.26.(화) ~ 6.9.(화) 16시까지

다. 접수 기간: 2026.6.4.(목) ~ 6.9.(화) 9시~16시

※ 토요일무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재공고 시 접수기간: **2026.6.10.(수)~ 6.12.(금) 16시까지**

라. 접 수 처: 해당 학교 행정실(학교운영위원회 간사)

※ 접수자는 보안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제출

마.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접수하는 본인이 반드시 마감일 이전에 지정학교 행정실로 유선 연락하고 도착 확인

4 교육지원청 심사 결과 제출

가. 제출기한: 2026.6.24.(수) 17:00까지

나. 제 출 처: 본청 초등교육과

다. 제출방법: 업무관리시스템 공문(**※비공개5, 보안 설정**)

라. 제출내용: **서식 4-5** (학교 및 교육청), **서식 6-1**, **서식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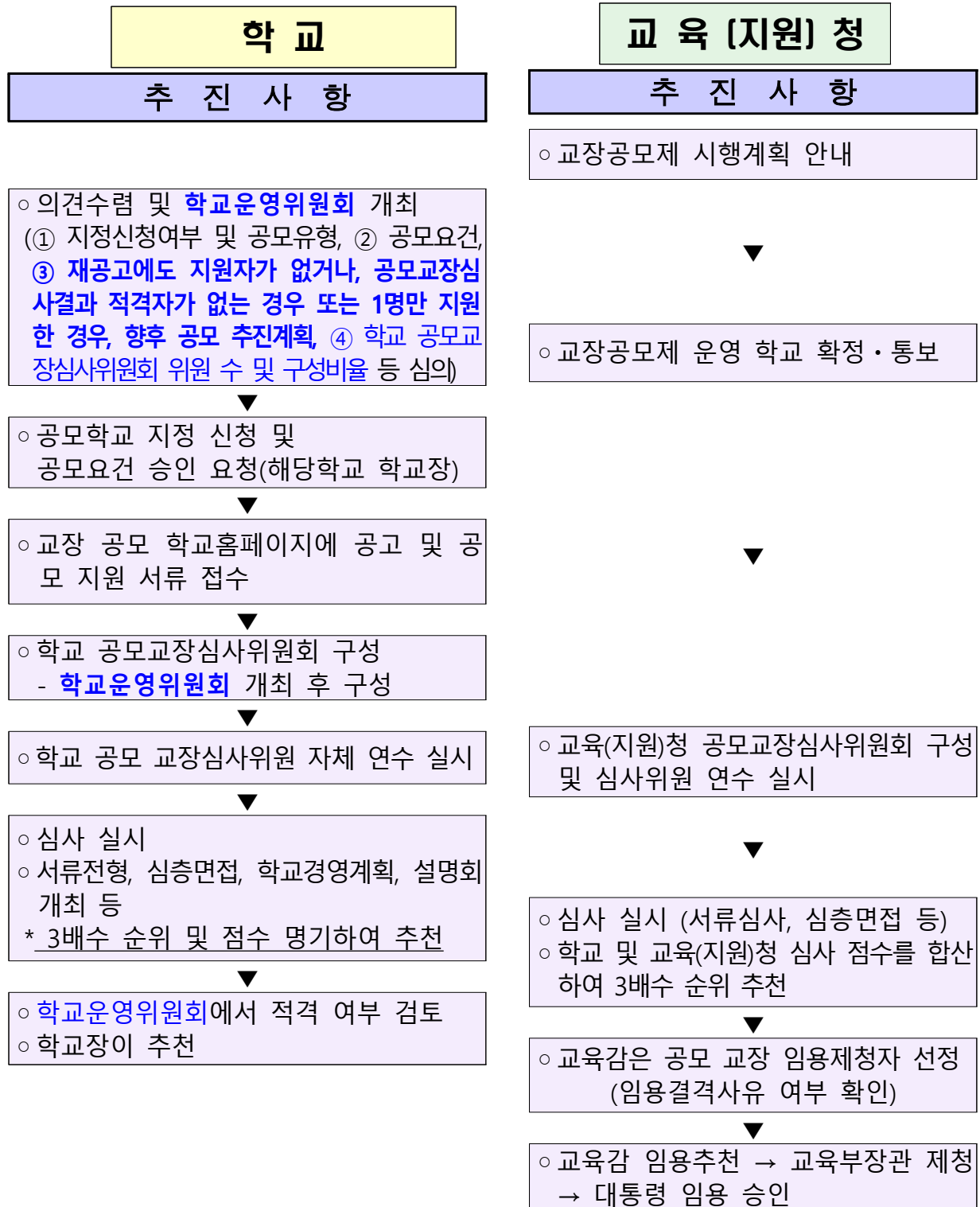
[참고자료 1] 추진 일정

2026.9.1.자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추진 일정

일정	내 용	주관
2026. 4.10.(금)	○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통보	본청
4.13.(월) ~5.7.(목)	○ 교장공모제 실시여부에 대한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 지정 신청 여부 심의 - 신청 희망학교는 공모요건 심의 ○ 교장 공모 지정 신청서 제출: 5.7.(목) 16시까지 - 학교는 소속 교육지원청과 본청 동시 제출	대상학교
5.18.(월)	○ 2026.9.1.자 공모학교 확정 및 학교에 지정 통보 - 학교별 공모 요건 내용 검토 및 승인	본청
5.19.(화)	○ 공모학교 대상 심사 선정 역량 강화 사전 연수	본청
5.21.(목)	○ 교장 공모 지정학교별 공고문 제출: 5.21.(목) 16시까지	지정학교
5.26.(화) ~6.12.(금)	○ 교장 공모 공고 및 접수 - 공고: 2026.5.26.(화) ~ 6.9.(화) 16시까지 - 접수: 2026.6.4.(목) ~ 6.9.(화) 9시~16시 - 재공고 및 접수: 2026.6.10.(수) ~ 6.12.(금) 16시까지 *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지정학교 교육(지원)청
6.15.(월) ~6.18.(목)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연수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1차) -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 ○ 대상자(3배수) 선정 및 추천(교육(지원)청에 제출)	지정학교
6.19.(금) ~6.24.(수)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 연수 실시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2차) - 서류심사, 심층면접 ○ 교육(지원)청 심사 대상자 평판도 조사 실시 ○ 교육지원청은 대상자(3배수) 선정 및 추천(본청 제출)	교육(지원)청
6.25.(목) ~6.29.(월)	○ 이의신청기간 - 6.25.(목)~6.29.(월) 16시까지	지정학교 교육(지원)청
6.30.(화) ~7.3.(금)	○ 공모 교장 임용제청 추천자 최종 선정	본청
2026. 7월 초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본청
2026. 7월 초	○ 교장공모제 임용 추천자 명단 제출	본청
2026.9.1.	○ 공모 교장 임용	교육부

※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교장공모제 추진 업무 흐름도



[참고자료 3]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예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예시)

심사위원 구성 수	학부모 위원 (40 ~ 50%)		교원 위원 (30 ~ 40%)		외부 위원 (10 ~ 30%)		구성인원 중 학운위 위원 가능 인원
	가능인원	비율	가능인원	비율	가능인원	비율	
10명일 때	4 ~ 5		3 ~ 4		1 ~ 3		0 ~ 5
10	4	40%	3	30%	3	30%	5 이하
10	4	40%	4	40%	2	20%	5 이하
10	5	50%	3	30%	2	20%	5 이하
10	5	50%	4	40%	1	10%	5 이하
11명일 때	5		4		(2 ~ 3) → 2		0 ~ 5
11	5	45%	4	36%	2	18%	5 이하
12명일 때	5 ~ 6		4		2 ~ 3		0 ~ 6
12	5	42%	4	33%	3	25%	6 이하
12	6	50%	4	33%	2	17%	6 이하
13명일 때	6		4 ~ 5		2 ~ 3		0 ~ 6
13	6	46%	4	31%	3	23%	6 이하
13	6	46%	5	38%	2	15%	6 이하
14명일 때	6 ~ 7		5		(2 ~ 4) → 2 ~ 3		0 ~ 7
14	6	43%	5	36%	3	21%	7 이하
14	7	50%	5	36%	2	14%	7 이하
15명일 때	6 ~ 7		5 ~ 6		2 ~ 4		0 ~ 7
15	6	40%	5	33%	4	27%	7 이하
15	6	40%	6	40%	3	20%	7 이하
15	7	47%	5	33%	3	20%	7 이하
15	7	47%	6	40%	2	13%	7 이하
16명일 때	7 ~ 8		5 ~ 6		2 ~ 4		0 ~ 8
16	7	44%	5	31%	4	25%	8 이하
16	7	44%	6	38%	3	19%	8 이하
16	8	50%	5	31%	3	19%	8 이하
16	8	50%	6	38%	2	13%	8 이하
17명일 때	7 ~ 8		6		(2 ~ 5) → 3 ~ 4		0 ~ 8
17	7	41%	6	35%	4	24%	8 이하
17	8	47%	6	35%	3	18%	8 이하
18명일 때	8 ~ 9		6 ~ 7		(2 ~ 5) → 2 ~ 4		0 ~ 9
18	8	44%	6	33%	4	22%	9 이하
18	8	44%	7	39%	3	17%	9 이하
18	9	50%	6	33%	3	17%	9 이하
18	9	50%	7	39%	2	11%	9 이하
19명일 때	8 ~ 9		6 ~ 7		(2 ~ 5) → 3 ~ 5		0 ~ 9
19	8	42%	6	32%	5	26%	9 이하
19	8	42%	7	37%	4	21%	9 이하
19	9	47%	6	32%	4	21%	9 이하
19	9	47%	7	37%	3	16%	9 이하
20명일 때	8 ~ 10		6 ~ 8		2 ~ 6		0 ~ 10
20	8	40%	6	30%	6	30%	10 이하
20	8	40%	7	35%	5	25%	10 이하
20	8	40%	8	40%	4	20%	10 이하
20	9	45%	6	30%	5	25%	10 이하
20	9	45%	7	35%	4	20%	10 이하
20	9	45%	8	40%	3	15%	10 이하
20	10	50%	6	30%	4	20%	10 이하
20	10	50%	7	35%	3	15%	10 이하
20	10	50%	8	40%	2	10%	10 이하

* 심사 당일 심사위원의 불참을 고려하여 12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10명으로 할 경우에는 예비심사위원 확보가 필요함

[참고자료 4]

□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2. 12. 11., 2015. 3. 27.>

1. 교장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5. 3.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21., 2015. 3. 2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이하 "공모 교장·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21.>

⑥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21.>

⑦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4호]

제12조의5(공모 교장 등의 임용·평가 등) ①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교장이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的人数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4.,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3. 20.>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유치원의 학부모
2.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해당 학교·유치원의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학교·유치원의 졸업생

나. 교육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③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국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공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되,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일 것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일 것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경력, 학교 또는 유치원 경영계획서, 상호 토론 및 면접 결과 등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4., 2018. 3. 20.>

⑤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라 공모 교장·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성과와 학교 또는 유치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4., 2018. 3. 20.>

⑥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공립 학교·유치원의 공모 교장·원장에 대한 평가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4., 2018. 3.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12. 4., 2013. 3. 23., 2018. 3. 20.>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 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 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가. 개별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50퍼센트(신청한 학교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4. 10. 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89호]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2. 28., 2024. 1. 23.>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28., 2024. 1. 23., 2024. 10. 8.>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및 제1항에 따라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28., 2024. 1. 23.>

서식 목록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학교 제출용

서식 1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신청 및 공모 요건 승인 요청서

교장공모 지원자용

서식 2-1 교장공모 지원서

서식 2-2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서식 2-3 자기소개서

서식 2-4 학교경영계획서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제출용

서식 3 교장 공모 지원 현황

학교 및 교육(지원)청용 예시

서식 4-1 심사위원 서약서

서식 4-2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위원별 채점표

서식 4-3 (서류심사 / 심층면접) 결과 집계표

서식 4-4 심사 최종 집계표

서식 4-5 교장공모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교장공모 학교 심사 결과 후보자 추천서

서식 5-1 학교 심사 결과 후보자 추천서(학운위용)

서식 5-2 학교 심사 결과 후보자 추천서(학교용)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출용

서식 6-1 교육(지원)청 심사 결과 보고서

심사 점검표

서식 6-2 교장공모제 심사 점검표[학교용]

서식 6-3 교장공모제 심사 점검표[교육(지원)청용]

학부모 의견수렴용 설문지 및 교장공모제 안내자료

서식 7-1 일반학교용 - 가정통신문(예시)

서식 7-2 자율학교용 - 가정통신문(예시)

평판도 및 만족도 설문지

서식 8-1 공모 교장 교육(지원)청 심사 대상자 평판도 조사 설문지

서식 8-2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만족도 설문지

서식 1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학교 제출용

2026.9.1.자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신청 및 공모 요건 승인 요청서

1. 학교 현황

학교명	학급수	전화번호(교무실) 전화번호(행정실)	주 소 (홈페이지 주소)

2. 지정 신청

공모 유형	☐ 초빙형 ☐ 내부형(A) ☐ 내부형(B) ☐ 개방형																																																											
결정 과정																																																												
지정신청 의견수렴 결과	<table> <tr> <th colspan="4">교장공모 지정 신청 관련</th><th colspan="4">내부형(B) 찬성 관련 (※ 내부형만 작성)</th></tr> <tr> <th>구 분</th><th>교직원</th><th>학부모</th><th>학운위</th><th>구 분</th><th>교직원</th><th>학부모</th><th>학운위</th></tr> <tr> <td>총 인원(명) ①</td><td></td><td>전체 학생 수</td><td></td><td>공모 지정 설문 참여 인원(명) ②</td><td>A</td><td>B</td><td>C</td></tr> <tr> <td>공모 지정 설문 참여 인원(명) ②</td><td>A</td><td>B</td><td>C</td><td>공모 지정 찬성 인원(명) ③</td><td>D</td><td>E</td><td>F</td></tr> <tr> <td>공모 지정 찬성 인원(명) ③</td><td>D</td><td>E</td><td>F</td><td>내부형A 찬성 인원(명) ④</td><td></td><td></td><td></td></tr> <tr> <td>찬성 비율(%) ③ / ② *100</td><td></td><td></td><td></td><td>내부형B 찬성 인원(명) ⑤</td><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d></td><td>내부형B 찬성 비율(%) ⑤ / ②*100</td><td></td><td></td><td></td></tr> </table> ※ 찬성 인원 ③ = 내부형A ④ + 내부형B ⑤				교장공모 지정 신청 관련				내부형(B) 찬성 관련 (※ 내부형만 작성)				구 분	교직원	학부모	학운위	구 분	교직원	학부모	학운위	총 인원(명) ①		전체 학생 수		공모 지정 설문 참여 인원(명) ②	A	B	C	공모 지정 설문 참여 인원(명) ②	A	B	C	공모 지정 찬성 인원(명) ③	D	E	F	공모 지정 찬성 인원(명) ③	D	E	F	내부형A 찬성 인원(명) ④				찬성 비율(%) ③ / ② *100				내부형B 찬성 인원(명) ⑤								내부형B 찬성 비율(%) ⑤ / ②*100			
	교장공모 지정 신청 관련				내부형(B) 찬성 관련 (※ 내부형만 작성)																																																							
	구 분	교직원	학부모	학운위	구 분	교직원	학부모	학운위																																																				
	총 인원(명) ①		전체 학생 수		공모 지정 설문 참여 인원(명) ②	A	B	C																																																				
	공모 지정 설문 참여 인원(명) ②	A	B	C	공모 지정 찬성 인원(명) ③	D	E	F																																																				
	공모 지정 찬성 인원(명) ③	D	E	F	내부형A 찬성 인원(명) ④																																																							
찬성 비율(%) ③ / ② *100				내부형B 찬성 인원(명) ⑤																																																								
				내부형B 찬성 비율(%) ⑤ / ②*100																																																								
결정 사유																																																												
공모 요건																																																												
지원자 부족 시 조치 방향	<table> <tr> <th>구 분</th><th>조치 방향</th></tr> <tr> <td>지원자가 1명인 경우 (계속 진행 / 공모 철회 / 유예) 중 선택 작성</td><td></td></tr> <tr> <td>지원자가 없거나 공모교장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85% 미만) (공모 철회 / 유예) 중 선택 작성</td><td></td></tr> </table>				구 분	조치 방향	지원자가 1명인 경우 (계속 진행 / 공모 철회 / 유예) 중 선택 작성		지원자가 없거나 공모교장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85% 미만) (공모 철회 / 유예) 중 선택 작성																																																			
구 분	조치 방향																																																											
지원자가 1명인 경우 (계속 진행 / 공모 철회 / 유예) 중 선택 작성																																																												
지원자가 없거나 공모교장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85% 미만) (공모 철회 / 유예) 중 선택 작성																																																												
비 고																																																												

2026.9.1.자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및
공모 요건 승인을 신청합니다.

2026. . . .

○○학교장 (직인)

서식 1

작성요령

1. 학교 현황

- 학교명: 학교 정식 명칭 입력
- 학급수: 일반학급수로 작성하되, 특수학급이 있으면 괄호 안에 작성
예) 일반학급 21, 특수학급 3 ⇒ 21(3)

2. 지정 신청

- 공모유형: 학교 종류 및 교장 자격 요건에 따라 4가지의 공모 유형 중에서 해당 유형 왼쪽 네모에 체크 표시

※ 자율학교는 해당학교에서 희망하는 공모 교장 응모 자격기준에 따라서 내부형 중 A, B형을 선택

- 결정과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논의 과정 및 결과를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록
- 의견수렴 결과: 의견수렴 내용을 숫자로 기록

※ 학부모란의 총인원은 전체 학생 수 기록

※ 찬성비율(%)은 (찬성인원/참여인원)로 계산

교장공모 지정 신청 관련			
구 분	교직원	학부모	학운위
총 인원(명) ①		전체 학생 수	
공모 지정 설문 참여 인원(명) ②	A	B	C
공모 지정 찬성 인원(명) ③	D	E	F
찬성 비율(%) ③ / ② * 100			

내부형(B) 찬성 관련 (※ 내부형만 작성)			
구 분	교직원	학부모	학운위
공모 지정 설문 참여 인원(명) ②	A	B	C
공모 지정 찬성 인원(명) ③	D	E	F
내부형A 찬성 인원(명) ④			
내부형B 찬성 인원(명) ⑤			
내부형B 찬성 비율(%) ⑤ / ② * 100			

※ 내부형(B) 찬성 관련 작성 시 유의사항

- 공모 지정 찬성 인원(③) = 내부형A 찬성 인원(④) + 내부형B 찬성 인원(⑤)

- 결정사유: 학교 여건, 구성원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교장공모제를 신청하게 된 사유를 개조식으로 기록
- 공모요건: 교장 공모 지원 자격(일반 요건) 외의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모 교장의 요건을 개조식으로 기록
- 비 고: 기타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학교 지정에 참고할 만한 사항 기록

※ 기록할 내용이 많을 경우, 2쪽으로 작성

서식 2-1

교장공모 지원자용

교장공모 지원서

※ 연령, 교육경력 계산 기준일: 2026.9.1.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사 진 (3cm×4cm) ※ 최근 3개월 이내 사진을 반드시 부착하여주세요
	현 소 속		현 직 위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최종학력		
	주 소				
교장자격증 종별 및 발급일자					

일 반 경 력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요실적
				~	
				~	
				~	

교 육 경 력	구분	근무처	근무기간	교육경력 (기준일: 2026.9.1.)			비 고
				년	월	일	
	교사		~				
	교감	(학교), (학교), (학교)	~				
	교장	(학교), (학교)	~				
	교육전문직	(), ()	~				
기타							
총교육경력							

서 약 동 의	위 본인은 교장공모 서류 중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표절 및 대필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표절 및 대필로 판명될 경우 공모 교장 추천 또는 임용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지원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 검증하고 표절검사를 위한 자료로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표절 관련 서약 동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 ⇐ '예' 또는 '아니오' 로 기재
--

본인은 2026.9.1.자 ○○학교 교장공모에 지원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학교장 귀하

----- (접수자가 자른 후 지원자에게 전달) -----

접 수 증

위 지원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직: 성명:
------	--	-----	--	-----	-----------

○○학교장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소 속 (기관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임 용 일		소지자격 (교 원)	
최종학력		주 요 교육경력			
주 요 활 동 ^ 실 적 요 약 v	※ 교육활동과 관련된 경력 및 실적 등 기재 <주의> 컬러 출력 금지, 컬러 PDF 금지 분량은 A4용지 4쪽 이내 <별지 계속 기재 가능>				
비 고	<근거서류 첨부>				
<유의사항> ※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를 금지하며, <u>특정 인사 및 단체 가입 여부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단계별 총점의 10점 감점 처리(학교 심사 총점의 10점 감점, 교육청 심사 총점의 10점 감점)</u> ■ 기재금지 사항 예시: 특정 인사 실명, 교원단체 실명, 특정 교원단체 소속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단체명 등					

※ 저작권 보호법상 약물 기호 사용 및 폰트 사용 주의

자 기 소 개 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성장 배경, 지원동기, 교육철학 등을 기재

<주의> 컬러 출력 금지, 컬러 PDF 금지

분량은 A4용지 4쪽 이내

※ 표절 유의

-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표절검사는 2010년 이후 실시한 교장공모제 관련 모든 자료가 축적되어 DB화되어 있음
- 일반적인 표절검사 결과보다 표절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므로 표절 등에 유의

[별지 계속 기재 가능]

<유의사항>

- ※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를 금지하며, 특정 인사 및 단체 가입 여부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단계별 총점의 10점 감점 처리(학교 심사 총점의 10점 감점, 교육청 심사 총점의 10점 감점)
 - 기재금지 사항 예시: 특정 인사 실명, 교원단체 실명, 특정 교원단체 소속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단체명 등

※ 저작권 보호법상 약물 기호 사용 및 폰트 사용 주의

학교경영계획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I. 학교교육 목표

II. 학교교육과정 운영

III. 학교교직원 관리 및 지원

IV. 지역사회 연계 활동

V. 시설, 환경, 재무 등 일반경영

<주의> 컬러 출력 금지, 컬러 PDF 금지

분량은 A4용지 20쪽 이내

※ 책자, 논문, 교육청·학교 자료 등에서 인용 시에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표절로 판정될 수 있음

-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표절검사는 2010년 이후 실시한 교장공모제 관련 모든 자료가 축적되어 DB화되어 있음
- 일반적인 표절검사 결과보다 표절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므로 표절 등에 유의

<유의사항>

- ※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를 금지하며, 특정 인사 및 단체 가입 여부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단계별 총점의 10점 감점 처리(학교 심사 총점의 10점 감점, 교육청 심사 총점의 10점 감점)
 - 기재금지 사항 예시: 특정 인사 실명, 교원단체 실명, 특정 교원단체 소속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단체명 등

※ 저작권 보호법상 약물 기호 사용 및 폰트 사용 주의

서식 3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제출용

2026.9.1.자 교장 공모 지원 현황

2026. . .

()교육(지원)청, ()학교

□ 공모 유형: () 지원 인원: 총 ()명

※ 연령, 경력 계산 기준일은 2026.9.1.로 함

연번	지원자명	현소속	직위	성별	연령	교육 경력	소지 자격	주요경력	비고 (최종 학위)
(예시)	김 국 민	대한초	교감	남	51	27.06	교감	교사 24년 교감 3년6월	대학원 (교육학 석사)
1									
2									
3									
4									
5									
6									
7									
8									
9									
10									

※ 공모 결과(재공고 포함)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교장공모제 학교 신청을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시, 조치 방향을 미리 결정함

※ 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사용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한 공모심사위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심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한 심사절차, 심사방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공모 교장 지원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심사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공모 교장 심사가 끝난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사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배하여 심사위원에서 해촉되고 심사 결과가 무효로 처리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본 동의서 1통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4-2

학교 및 교육(지원)청용 예시

2026.9.1.자 교장공모 임용후보자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위원별 채점표

1. 평가 영역 및 요소별 배점

평가영역	평가요소	배점
I. 【 점】	I-1.	5
	I-2.	5
II. 【 점】	II-1.	5
	II-2.	5
	II-3.	5
	II-4.	5
III. 【 점】	III-1.	5
	III-2.	5
	III-3.	5
	III-4.	5

<5점 척도> 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 2점: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 지원자별 서류전형 평가표

평가 영역 및 요소 관리번호	영역 I 자기소개서		영역 II 학교경영계획서				영역 III 경력 및 주요 활동실적				합계	비고
	요소 I-1	요소 I-2	요소 II-1	요소 II-2	요소 II-3	요소 II-4	요소 III-1	요소 III-2	요소 III-3	요소 III-4		

2026. . .

심사위원 :

(서명)

[학교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서식 4-3

학교 및 교육(지원)청용 예시

**2026.9.1.자 교장공모 임용후보자
(서류심사) 결과 집계표**

기관명:

지원자 성 명	심사위원별 평가점 총점											제외점수				평균 점수	비고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8	위원 9	위원 10	위원 11	최고		최저			
												1	2	1	2		
(예시) 위원 7명인 경우	95	87	88	85	92	87	89					95		85		88.6	기재금지 사항위반
(예시) 위원 11명인 경우	98	97	87	93	84	88	88	85	91	89	84	98		84		89.1	

※ 제외 점수: 심사위원의 평가점 중 위원 수 10%의 상위 점수와 위원 수 10%의 하위 점수를 제외
(제외 인원은 반올림하여 계산함, 18쪽 참조)

※ **평균** 점수: 심사위원의 평가점 중 제외 점수를 뺀 나머지 평가점의 평균
(평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2026. . .

확인자(심사위원장):

(서명)

서식 4-3

학교 및 교육(지원)청용 예시

**2026.9.1.자 교장공모 임용후보자
(심층면접) 결과 집계표**

기관명:

지원자 성 명	심사위원별 평가점 총점											제외점수				평균 점수	비고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8	위원 9	위원 10	위원 11	최고		최저			
												1	2	1	2		
(예시) 위원 7명인 경우	95	87	88	85	92	87	89					95		85		88.6	
(예시) 위원 11명인 경우	98	97	87	93	84	88	88	85	91	89	84	98		84		89.1	

※ 제외 점수: 심사위원의 평가점 중 위원 수 10%의 상위 점수와 위원 수 10%의 하위 점수를 제외
(제외 인원은 반올림하여 계산함, 18쪽 참조)

※ **평균** 점수: 심사위원의 평가점 중 제외점수를 뺀 나머지 평가점의 평균
(평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2026. . .

확인자(심사위원장):

(서명)

서식 4-4

학교 및 교육(지원)청용 예시

2026.9.1.자 교장공모 임용후보자 심사 최종 집계표

서울○○초등학교

연 번	지원자			평가점수					순위	비고
	소속	직위	성명	서류 심사	설명회	심층 면접	계	최종 점수		
예시								78.6 88.6		기재 금지 사항 위반
1										
2										
3										

2026. . .

확인자(심사위원장):

(서명)

서식 4-5

학교 및 교육(지원)청용 예시

2026.9.1.자 교장공모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위원구성 학교(기관)	위원구분	성명	성별	학운위 위원여부	주요경력	추천 자격
예시	00초등학교	교원위원			O		
	00중학교	학부모위원			X		
	00교육지원청	외부위원			X		졸업생
1							
2							
3							

※ 위원회 구성: 위원 수 및 위원회 구성 비율 준수 바람(12쪽 참조)

2026.9.1.자 교장공모 임용후보자 학교 심사 결과 후보자 추천서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순위	지원자			평가점수
	소속	직위	성명	
1				
2				
3				

2026. . .

○○○○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장 귀하

2026.9.1.자 교장공모 임용후보자 학교 심사 결과 후보자 추천서

▣ 교장공모 응모학교명: 서울○○초등학교

순위	지원자			평가점수
	소속	직위	성명	
1				
2				
3				

2026. . .

○○○○○학교장

○○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2026.9.1.자 교장공모 임용후보자 교육(지원)청 심사 결과 보고서

▣ 교장공모 응모학교명: 서울○○초등학교

순위	소속	직위	성명	학교 심사점수	교육(지원)청 심사점수	최종 합산점수	비고
1							
2							
3							

2026. . .

○○교육(지원)청 공모 교장심사위원장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6-2

학교장 → 교육(지원)청

2026.9.1.자 임용 교장공모제 심사 점검표 [학교용]

학교명		학교급	초등
심사일	2026. . .	공모유형	초빙형(), 내부형A(), 내부형B(), 개방형()

영역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비고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위 원: 명)	
	2) 심사위원의 40%~50%이 학부모로 구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학부모: 명)	
	3) 심사위원의 30%~40%이 교원으로 구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교 원: 명)	
	4) 심사위원의 10%~30%이 외부인사로 구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외부인사: 명)	
	5) 운영위원은 50% 이하로 구성 되었는가?	예 / 아니오	
공정한 심사를 위한 노력	6)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는가?	예 / 아니오	
	7)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심사위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는가?	예 / 아니오	
	8) 심사위원의 협이에 의해 심사기준(안)및 심사표를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9) 심사기준(안)의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와 배점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10) 심사위원의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였는가?	예 / 아니오	
	11) 심사집계는 심사위원이 모두 참석한 곳에서 집계하며 최종심사 발표까지 비공개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예 / 아니오	
	12) 공모과정에서 지원자와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등 심사 관련자 간 청탁·담합·부당한 지시 등 비위·비리는 없었는가?	예 / 아니오	
	13)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사항 유무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하였는가?	예 / 아니오	
	14)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하여 접수 마감일 익일부터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는가?	예 / 아니오	
	15)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는 보안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 위원장에게 제출하였는가?	예 / 아니오	
	16) 지원자 접수 종료 후 지원자에 대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는가?	예 / 아니오	
	17)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의 명단을 공개하였는가?	예 / 아니오	
특이 사항	<기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가 노력한 점>		

점검일: 2026. . .

점검자 ()교육지원청

장학사 성명:

(서명)

확인자 서울()초등학교

교 장 성명:

(서명)

서식 6-3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출용

2026.9.1.자 임용 교장공모제

심사 점검표 [교육(지원)청용]

교육청명	()교육지원청	학교 수	()교
심사일	2026. . .	공모유형	초빙형(), 내부형A(), 내부형B(), 개방형()

영역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비고
심사 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의 외부인사가 50% 이상으로 구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	
	2) 심사위원회 위원 수(총)명	내부인사: 명 외부인사: 명	
심사 기준안	3) 심사위원 서약서는 준비되었는가?	예 / 아니오	
	4) 심사위원 사전 연수를 하였는가?	예 / 아니오	
	5)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안) 및 채점표를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6) 심사기준(안)의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와 배점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심사 결과	7) 심사표를 수정할 때 심사위원이 서명하고 수정하도록 안내하는가?	예 / 아니오	
	8) 심사표 집계 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가?	예 / 아니오	
	9) 집계결과의 비공개를 철저히 안내하고 지켜지고 있는가?	예 / 아니오	
공정한 심사를 위한 노력	10) 공모 교장 지원과정 및 심사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예 / 아니오	
	11) 서류검토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는가?	예 / 아니오	
	12)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사항 유무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하였는가?	예 / 아니오	
	13)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참관인이 있는가? (학교별 인원)		
	14) 지원자에게 공평하고 적절한 시간을 할당하여 역량을 평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15) 회의록을 작성하는가?	예 / 아니오	
특이사항	<기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노력한 점>		

점검일: 2026. . .

점검자 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 성명:

(서명)

확인자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과 장 성명:

(서명)

가 정 통 신 문 (예시)

(※ 학교 여건에 따라 종이 설문 또는 온라인 설문 방식 선택 가능)

일반학교용

2026.9.1.자 교장공모제 관련 학부모 의견수렴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장공모제는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직, 중임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교는 2026.8.31.자로 현 교장선생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에 참고하기 위하여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오니, 아래 내용 및 뒷면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설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 교장 운영 개요

가. 공모 교장 임용 기간: 2026.9.1. ~ 2030.8.31.(4년)

나. 본교는 일반학교로 학교장의 (정년퇴직, 중임만료, 공모만료, 정기전보(4년) 중 택1)로 인한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초빙형)에 해당함

다. 공모 유형 및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뒷면 안내 자료 참고)

대상학교	공모 유형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추진근거
일반학교	초빙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2. 교장공모제 추진 관련 일정 및 안내사항은 추후 별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장을 임용 발령함

2026. . .

OO학교장

----- 자르는 선 -----

2026.9.1.자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학부모 설문조사

교장공모제 신청 찬성	교장공모제 신청 반대

2026년 월 일

()학년 ()반 ()번 학생 ()의 학부모 : (서명)

※ 학생 및 학부모의 성명 기입은 중복 제출 방지용(단, 학생 1인당 1부씩 의견 제출 가능)

<학교알리미 등을 이용한 설문으로 중복 제출 방지가 가능할 경우 학생, 학부모 성명 기입 생략 가능>

※ 학부모님이 선호하는 곳에 ○표하여 **00월 00일(0)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7-1 일반학교용 - 뒷면

< 교장공모제 안내 자료 >

1. 교장공모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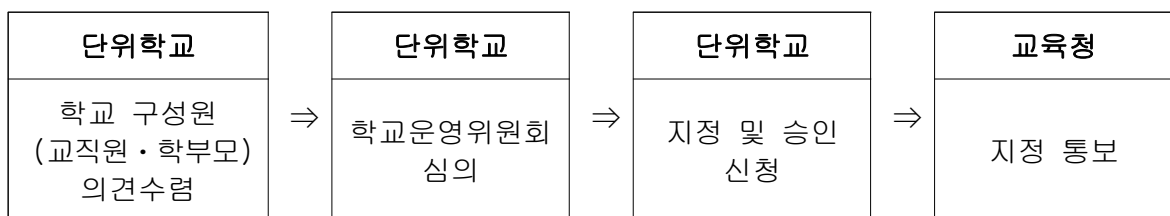
단위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교육청에 추천(3배수)한 뒤, 교육청에서 심사를 통해 교육감에게 추천(3배수)하여, 교육감이 최종 1인을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하는 제도

2. 교장공모제 개요

가. 공모 교장 임용기간: 2026.9.1. ~ 2030.8.31.(4년)

나. 교장공모제 신청 대상 학교: 정년퇴직, 중임만료, 공모만료, 정기전보(4년) 등으로 2026.9.1.자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다.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신청 절차(단위학교→교육청)



3. 공모 유형별 자격 기준

대상학교	공모 유형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추진근거
일반학교	초빙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자율학교	내부형(A)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내부형(B)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참고] 학교장 임용 유형

- 교육청에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인사관리원칙에 의거하여 임용 발령
- 교장공모제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제청

가 정 통 신 문 (예시)

(※ 학교 여건에 따라 종이 설문 또는 온라인 설문 방식 선택 가능)

자율학교용

2026.9.1.자 교장공모제 관련 학부모 의견수렴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장공모제는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직, 중임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교는 2026.8.31.자로 현 교장선생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에 참고하기 위하여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오니, 아래 내용 및 뒷면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설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 교장 운영 개요

가. 공모 교장 임용 기간: 2026.9.1. ~ 2030.8.31.(4년)

나. 본교는 **자율학교**로 학교장의 (정년퇴직, 중임만료, 공모만료, 정기전보(4년) 중 택1)로 인한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내부형(A) 또는 내부형(B))에 해당함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관련 항목 중에서 선택)

다. 공모 유형 및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뒷면 안내 자료 참고)

대상학교	공모 유형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추진근거
자율학교	내부형(A)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내부형(B)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2. 교장공모제 추진 관련 일정 및 안내사항은 추후 별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장을 임용 발령함

2026. . .

OO학교장

자르는 선

2026.9.1.자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및 공모 유형 희망 학부모 설문조사

- ▶ 교장공모제 신청 찬성 시 내부형(A) 또는 내부형(B) 중 한곳에 ○ 표시(중복 시 무효 처리)
교장공모제 신청 반대 시 '교장공모제 신청 반대' 란에 ○ 표시(공모유형에 대한 의견제시 불가)

교장공모제 신청 찬성		교장공모제 신청 반대
내부형(A)	내부형(B)	

2026년 월 일

()학년 ()반 ()번 학생 ()의 학부모 : _____(서명)

※ 학생 및 학부모의 성명 기입은 중복 제출 방지용(단, 학생 1인당 1부씩 의견 제출 가능)

<학교알리미 등을 이용한 설문으로 중복 제출 방지가 가능할 경우 학생, 학부모 성명 기입 생략 가능>

※ 학부모님이 선호하는 곳에 ○표하여 **00월 00일(0)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7-2 자율학교용 -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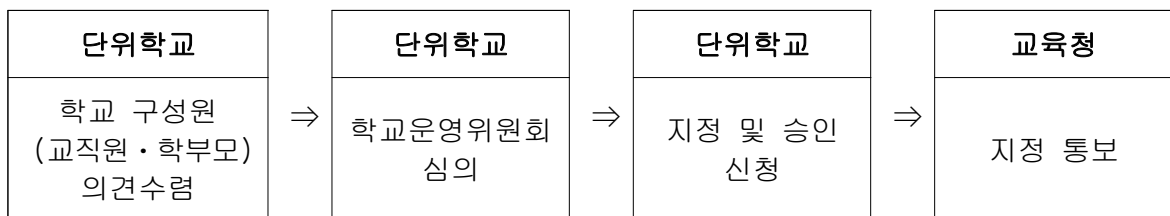
< 교장공모제 안내 자료 >

1. 교장공모제란?

단위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교육청에 추천(3배수)한 뒤, 교육청에서 심사를 통해 교육감에게 추천(3배수)하여, 교육감이 최종 1인을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하는 제도

2. 교장공모제 개요

- 가. 공모 교장 임용 기간: 2026.9.1. ~ 2030.8.31.(4년)
- 나. 교장공모제 신청 대상 학교: 정년퇴직, 중임만료, 공모만료, 정기전보(4년) 등으로 2026.9.1.자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 다.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신청 절차(단위학교→교육청)



3. 공모 유형별 자격 기준

대상학교	공모 유형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추진근거
일반학교	초빙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자율학교	내부형(A)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내부형(B)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 내부형(B) 유형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 가능하며, 해당 공모 유형 지정을 신청한 학교 중에서 교육청이 지정하되, 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정

[참고] 학교장 임용 유형

- 교육청에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인사관리원칙에 의거하여 임용 발령
- 교장공모제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제청

서식 8-1

2026.9.1.자 공모 교장 교육(지원)청 심사 대상자 평판도 조사

본 설문은 2026.9.1.자 교장공모제 교육청 심사 대상자에 대한 평판도 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교장 공모제 선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는 응답 완료 후 수정이 불가능하고 설문은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

◎ 평판도 조사 대상: 공모 교장 교육청 심사 대상자

◎ 설문 참여 대상: 평판도 조사 대상자와 동일교에 소속된 교직원
(평판도 조사 대상자 본인은 설문 참여 불가)

◎ 설문조사 기간: 2026.6.19.(금) 09:00 ~ 6.24.(수) 14:00

서울특별시교육청

※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항은 설문 중복 참여 여부 체크에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1. 설문 응답자의 소속학교(소속기관)을 약식명으로 입력해 주세요.(예: 서울초)

2. 평판도 조사 대상자(교장공모 교육청 심사 대상자)를 입력해 주세요.

(예: 교감 홍길동, 교사 김유신, 장학사 윤봉길)

3. [평판도 조사] 평판도 조사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7문항)

문항 번호	세부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대상자는 학교 교육목표와 비전, 교육활동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할 리더십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대상자는 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전문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상자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과 수업방법 개선을 지원하는 민주적인 학교 경영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대상자는 학생 학력 향상 지원과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추진할 역량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대상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대상자는 매사 청렴하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상자는 공모교장이 된다면 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선택) 평판도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공모교장으로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자유롭게 의견을 입력해 주십시오.(문제점이 없으면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 실제 설문 구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서식 8-2

2026.9.1.자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만족도 설문지

본 설문은 2026.9.1.자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교장공모제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는 응답 완료 후 수정이 불가능하고 설문은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

◎ 설문 참여 대상: 2026.9.1.자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 설문조사 기간: 2026.7.14.(화) 09:00 ~ 7.17.(금) 17:00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항은 설문 중복 참여 여부 체크에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1. 설문에 참여하는 분의 신분을 선택해 주세요.

- 교직원 ○ 학부모

2. 설문에 참여하는 분의 소속(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명을 입력해 주세요.

3. [만족도 조사] 다음 문항에 평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9문항)

문항 번호	평가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학교 구성원에게 공모학교 지정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가 익명화되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및 안내가 잘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공모 교장 심사 진행 과정 중에 지원자에 대한 비밀 및 보안이 잘 유지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경영설명회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심사과정에서 청탁, 담합, 부당한 지시 등 비위, 비리가 전혀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심사과정에 과도한 점수 편차에 따른 공정성 시비가 전혀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 절차에 맞고, 투명하게 잘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선택] 교장공모제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이 없는 경우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 실제 설문 구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